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배현진·김성원·박정훈

우재준 • 장동혁 • 김태호

박수영 · 김기웅 · 김대식

조지연 · 정점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 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·관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운영할 필요가 있지만, 실제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,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).

법률 제 호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의2 중 "범죄"를 "어린이공원과 그 밖에 범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 등	제19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 등
의 설치·관리) 제19조제1항	의 설치·관리)
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	
관리하는 특별시장・광역시장	
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	
사・시장 또는 군수(이하 "공	
원관리청"이라 한다)는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범죄</u>	어린이공원
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	<u>과 그 밖에 범죄</u>
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	
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	
등을 설치・관리하여야 한다.	